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1

발의연월일: 2021. 3. 29.

발 의 자: 백종헌·김용판·서병수

서일준 · 이종배 · 이주환

정진석 · 정찬민 · 지성호

한기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('20.9.12)에 따라 감염병 R&D 컨트롤타 워로서 감염병 진단제·백신·치료제 개발 등 전주기적으로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수행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활용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용근 거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6(감염병 연구개발 지원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 정 또는 해제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·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재 정 안 제8조의6(감염병 연구개발 지원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・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・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조사・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. ③ 제1항에 따른출연금의 지급・사용・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및 같은
	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

<u>다.</u>